

제 호

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

○ 기관명:

○ 소재지:

○ 기관장 성명: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질병관리본부장

직인